

# 재단법인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

수신자 수신처 참조

(경유)

제 목 2020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(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 2학기) 선발 공고 일정

1. 귀 학교 및 읍·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(재)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는 2020년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학교에서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읍·면장께서 이장회보, 게시판 게재, 각종 회의 개최시 수시 홍보를 요청하오니, 대상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공고기간 : 2020. 9. 23. ~ 10. 6.
  - 나. 접수기간 : 2020. 10. 7. ~ 10. 23.
  - 다. 선발분야 : 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 2학기
  - 라. 접 수 처 : 해당 학교 및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접수
  - 마. 자격 요건 : 불임 공고문 참조

불임 2020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선발공고 1부. 끝.

**(재)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장**



수신처 : 장수교육지원청, 관내 중·고등학교, 노,로, 도

★사무국장 박덕선

이사장 장영수

시행 애향재단 - 124(2020. 09. 21.) 접수 ( )

우597-8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5 / 전화 (063)350-2230 /전송(063)350-2420

재)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공고 제2020 - 4호

## 2020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선발공고

장수군 지역인재 육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20년  
(재)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3일

(재)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장



### 1 장학생 선발개요

- 선발분야  
<1개 분야> 대학 신입생 반값등록금(2학기)
- 공고기간 : 2020. 9. 23. ~ 10. 06.  
※ 장수군 홈페이지 : <http://www.jangsu.go.kr> 공지사항
- 접수기간 : 2020. 10. 07.(수) 09:00 ~ 10. 23.(금) 18:00 (3주간) (단, 토·공휴일 제외)
- 접수방법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- 선발통보 및 장학금 지급 : 2020. 11월 말
- ※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

### 2 신청자격 및 기준

#### 1. 공통사항(주소지)

- 보호자(부모중 1명)가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이상 계속 거주
- 부모 사망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

#### 2. 세부사항 (학년기준 : 2020년도)

구 분	신청자격(기준)	지급액
대학 신입생 반값등록금	○ 대학교 1학년 신입생 (대학교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반값 지원)	등록금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

### 3

## 제출서류

### 1. <1개 분야 장학금>

구분	제출서류	비고
공통서류	<input type="radio"/> 장학금 지원 신청서(별지 1호) <input type="radio"/> 재학증명서 <input type="radio"/>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(2년) <input type="radio"/>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 <input type="radio"/>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동의서(별지 3호) <input type="radio"/> 통장사본	
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	<input type="radio"/> 등록금 납입 영수증 <input type="radio"/> 서약서(별지 2호)	

### 4

## 장학금 지급 제외

- 제외대상 : 1979(만40세)이전 출생자,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),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대학의 재학생
- 장학금 회수 :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
  1. 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
  2. 휴학하였을 때
  3. 규정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
  4.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
  5.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의거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
  6. 접수서류 등이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## 5

##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

-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반환(단, 생활비 지원 제외)
-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제한  
예시)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300만원을 지급 받고,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, 등록금을 초과한 100만원을 반환해야 함

## 6

## 기타사항 및 문의처

◆ 접수된 지원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회수 조치

- 문의처 : (재)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(351-2567)  
장수군 행정지원과(350-2166)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장학금 지원 신청서

지원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교 신입생 반값 등록금(2학기)					
○ 학생 인적사항						
학 교 명	학교	학과(부)	학년			
학생성명		성 별				
생년월일		학 번				
주 소		출신고교				
휴대전화		이메일				
○ 보호자 인적사항						
관계	성명	생년월일	주소	장수군 전입일자	전화	
					자택	휴대전화
○ 입금계좌(학생 또는 보호자)						
금융기관		계좌번호		예금주		

### \* 통장사본 제출(필)

상기 본인은 (재)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인재육성규정에 의한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지원자 : (날인 또는 서명)

보호자 : (날인 또는 서명)

**(재)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장 귀하**

(별지 제2호 서식)

## 서 약 서

본인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의 장학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 또는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매 학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
### <이중지원의 범위>

구분	종 류
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행정안전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</li><li>■ 법원행정처</li><li>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</li><li>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</li><li>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</li><li>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</li><li>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</li><li>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</li><li>■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/li><li>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/li><li>■ 「공직자유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</li></ul>
학 자 금 종 류	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한국장학재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든든학자금(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)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,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등</li><li>■ 공무원연금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국가보훈처, 국방부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</li></ul></li></ul>
	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I · 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생, 대통령드림장학생, 국가 장학생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생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 장학금, 사랑드림 장학금 등</li><li>■ 정부, 공공기관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, 지자체,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금 받은 장학금</li><li>■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(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'BK21', 'NURI'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이전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</li>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</li></ul></li></ul>
중복지원 예외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근로장학금,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 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※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</li><li>■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</li></ul>

2020년 월 일

지원자 : (날인 또는 서명)  
보호자 : (날인 또는 서명)

(별지 제3호 서식)

##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

본인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금 지원을 신청하며, 동 신청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4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신용정보법')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		
수집·이용 목적	학자금지원 (장학 또는 대출)	■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■ 민원 처리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
	증복지원 확인·반환(상환)안내	■ 증복지원 판단 및 확인 ■ 증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
	※ 증복지원 :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증복지원 받은 경우	
수집·이용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소속학교, 주소,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</li><li>■ 학자금지원정보 : 지원상품종류, 지급일시,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</li></ul> <p>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</p>	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	
2. 제공·조회에 관한 사항		
제공·조회대상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행정안전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</li><li>■ 법원행정처</li><li>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</li><li>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</li><li>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</li><li>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</li><li>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</li><li>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</li><li>■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/li><li>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/li><li>■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</li><li>- 수집·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</li></ul>	
	학자금지원 (장학 또는 대출)	■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■ 민원 처리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
	증복지원 확인·반환(상환)안내	■ 증복지원 판단 및 확인 ■ 증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
	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	
	위 개인정보는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·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	
	3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
	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·선정·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
	2020년 월 일	
	(학 생) 성명 :	(서명 또는 인) (생년월일 : )
	(보호자) 성명 :	(서명 또는 인) (생년월일 : )
	(보호자) 성명 :	(서명 또는 인) (생년월일 : )

\*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서명하였습니다.